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035
-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찬성의원 18명)
- 발 의 일 : 2022년 1월 19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25일

## 2. 제안이유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인력지원을 한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의 휴게시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피로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안 24조 제18항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22. 1. 27. ~ 2. 8)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안 제24조제18항)을 신설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⑰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⑰ (현행과 같음)
<u>〈신설〉</u>	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 사무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회복 등을 위해 인력지원을 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의 휴게시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p>「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서울특별시 특별휴가 현황]

휴 가 종 류		휴 가 일 수	규정여부		비고	
			복무규정	서울시 조례 (대상추가)		
경조사 휴 가	결혼	본인	5일	0	0	
		자녀	1일	0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0	
	출산	배우자	10일	0	0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일			
	입양	본인	20일	0	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0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0	'17.5.18 조례개정 (2일 ⇒ 3일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	0	'17.12.20. 조례개정 (3일 ⇒ 5일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0	0 (그 형제자매 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일	-	0		
여성보건휴가(무급)		매월 1일	0	0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1일 1시간~2시간 최대 24개월, 71개월이하 자녀 양육시	0	0	'17.5.18. 조례개정 (육아시간 여성공무원⇒ 공무원으로 대상확대)	
임신검진휴가(유급)		임신기간중 10일	0	0	복무규정 개정	
유산·사산휴가	여성공무원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0	0	복무규정 개정	
	남성공무원	3일				
난임치료 휴가	여성공무원	시술일, 전후 1~4일	0	0	복무규정 개정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 1일				
수업휴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일수	0	0		
재해구호휴가		10일 이내	0	0	복무규정 개정	
장기재직특별휴가		재직기간 10~19년 10일, 20~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	0	'14.1.9. 조례개정 신설	
자녀입영휴가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입영당일 1일	-	0	'17.5.18. 조례개정 신설	
가족돌봄휴가	고등학교 이하 자녀(유급)	2일(2자녀 이상 3일)	0	0	복무규정 개정	
	장애아동·한부모(유급)	상동				
	기타 가족에 대한 돌봄(무급)	10일 이내				
성과우수자휴가		10일 이내	-	0	'21.3.25. 조례개정	

특별휴가

○ 2021년 이전에 실시된 선거사무에 협조지원한 공무원들에게 이미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부여해 왔고, 제20대 대통령선거(2022. 3. 9.) 및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2022. 6. 1.)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휴가 또는 공가처리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바, 특별휴가 부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 협조지원에 필요한 인력(자치구 및 출연기관 1,000명)을 요청하고 있음.

연번	지역명(위원회명)	추천 요청인원(명)	
		시(본청 및 사업소)	투출기관
1	종로구	30	0
2	중구	30	0
3	용산구	30	0
4	성동구	30	0
5	광진구	20	20
6	동대문구	20	20
7	중랑구	20	20
8	성북구	20	20
9	강북구	20	20
10	도봉구	20	20
11	노원구	30	20
12	은평구	20	20
13	서대문구	20	20
14	마포구	20	20
15	양천구	20	20
16	강서구	30	20
17	구로구	20	20
18	금천구	30	0
19	영등포구	20	20
20	동작구	20	20
21	관악구	30	20
22	서초구	20	20
23	강남구	30	20
24	송파구	30	20
25	강동구	20	20
계		600	400

- 다만, 현재 선거사무 협조지원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는 바, 특별휴가로 한정하는 것이 특별휴가 또는 공가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행정국은 선거사무 협조지원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부여하고 있고,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별휴가로 규정하는 것은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또한, 대통령 선거 및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예 협조지원을 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2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파악되는 바, 조례 개정예 따른 특별휴가 대상자 규모 등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선거실시에 협조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조례 개정예를 촉구하는 방안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참고자료]

##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한 협조사항

① 추천인원 : [별지1] 참조

② 추천기준

○ 소속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 제외

○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③ 근무시간 : 2022. 3. 9.(수) 16:00경 ~ 익일 개표 종료 시

※ 개표사무 교육 등으로 16:00 정도 개표소 출석, 구위원회별 개표종료 시 근무 종료

④ 근무장소 : 확정 후 별도 안내

※ 서울시 관내 개표소(25개소) ⇒ 희망지역(구) 배치예정 (별지 1 참조)

⑤ 근무수당 : 120,000원 정도 [수당 6만 원×2일분, 귀가여비·식사 별도 제공]

※ 국회 제출 예산안 기준

⑥ 명단통보 : 2021. 12. 20.(월)까지 ⇒ [별지 3]에 따라 통보

⑦ 기타사항

○ 투·개표소에는 사전 방역,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투·개표 사무인력 등에게는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등을 제공합니다.

○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휴게시간(특별·포상휴가 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공 직 선 거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16.>

##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생략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10.1.25., 2010.5.17., 2018.4.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 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3.>

⑪ 생략

## **제174조(개표사무원) ① 생략**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3.12.>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3.>